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정남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4년 04월 1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성명 | 성명 생년월일 | 최종신고 주소 | 신고사항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송** | 송** 2004-12-11 |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| 재등록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정혜정 문의전화 : 031-5189-4637)

2024년 04월 02일

